

과 세 기 간	· · · ~ · · ·	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	상 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업무용 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

① 복식 부기 의무 여부	② 차량 번호	③ 차종	④ 임차 여부	⑤ 보험 가입 여부	⑥ 총 주행 거리 (km)	⑦ 업무용 사용거리 (km)	⑧ 업 무 사용비율	⑨ 취득가액 (취득일, 임차기간)	⑩ 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	⑪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							
										⑫ 감가 상각비	⑬ 임차료	⑮ 유류비	⑯ 보험료	⑰ 수선비	⑱ 자동차세	⑲ 기타	⑳ 합계
⑭감가 상각비 상당액																	
								(. . ~ . . .)									
								(. . ~ . . .)									
								(. . ~ . . .)									
								(. . ~ . . .)									
								(. . ~ . . .)									
㉑ 합계								(. . ~ . . .)									

2.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불산입 계산

㉒ 차량 번호	㉓ 업무사용금액			㉔ 업무외사용금액			㉕ 감가상각비 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	㉖ 필요경비 불산입 합계 (㉓+㉕)	㉗ 필요경비 산입 합계 (㉔-㉖)
	㉕ 감가상각비 (상당액) [(㉒ 또는 ㉔)×(㉓)]	㉖ 관련비용 [(㉔-㉒ 또는 ㉔-㉔)×(㉓)]	㉗ 합계 (㉕+㉖)	㉕ 감가상각비 (상당액) (㉒-㉕ 또는 ㉔-㉕)	㉖ 관련비용 [(㉔-㉒ 또는 ㉔-㉔)-㉕]	㉗ 합계 (㉕+㉖)			
㉘ 합계									

3.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

㉓ 차량번호	㉔ 차종	㉕ 취득일 (입차기간)	㉖ 전기이월액	㉗ 당기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	㉘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 누계	㉙ 필요경비추인(산입)액	㉚ 차기이월액(㉘-㉙)
㉛ 합계							

4.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

㉜ 차량번호	㉝ 양도가액	㉞ 세무상 장부가액				㉟ 처분손실 (㉝-㉞<0)	㊱ 당기필요경비 산입액 (㉟≤800만원)	㊲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 (㉟-㊱)
		㉟ 취득가액	㊰ 감가상각비 누계액	㊱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(=㊲)	㊲ 합계 (㉟-㊰+㊱)			
㊳ 합계								

5.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

㊴ 차량번호	㊵ 차종	㊶ 처분일	㊷ 전기이월액	㊸ 당기 필요경비 한도초과금액(=㊹)	㊹ 필요경비산입액 (800만원 한도)	㊺ 차기이월액 (㊷+㊸-㊹)
㊻ 합계						

작성 방법

1. 업무용 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

- 가. 복식부기의무(①): 「소득세법」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만 작성하며, 해당되는 경우 "Y"로 표시합니다.
- 나. 차량번호란(②):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.
- 다. 차종란(③): 업무용 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.
- 라. 임차여부(④): 업무용 승용차의 임차여부(자가, 렌트, 리스)를 적습니다.
- 마. 보험가입여부란(⑤)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78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(업무전용자동차보험)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.
- 바. 총주행거리란(⑥): 해당 과세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.
- 사. 업무용사용거리란(⑦)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래처·대리점 방문, 회의 참석, 판촉 활동,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.
- 아. 업무용사용비율란(⑧)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78조의3제4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,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아래의 구분
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.
- 1)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(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. 이하 같음) 이하인 경우: 100분의 100
 - 2)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: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
- 자. 보유 또는 임차기간란(⑩):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(임차)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(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)을 적습니다.
- 차.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(⑪):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.

2.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

- 가. 업무사용금액(㉓):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용 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- 나. 업무외사용금액(㉔):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다.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(㉕):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(상당액)이 800만원(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8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)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
3.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 명세

- 가. 전기이월액(㉖):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.
- 나.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액 누계(㉗): ㉖의 금액과 ㉕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다. 필요경비추인(산입)액(㉘)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78조의3제8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(상당액) 이월액을 필요경비로 추인(산입) 합니다.

4.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

- 가. 감가상각비 누계액(㉙)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.
- 나. 처분손실(㉚):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.
- 다. 당기필요경비산입액(㉛): ㉙의 금액이 8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.
- 라.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(㉜): ㉙의 금액이 ㉛를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
작성 방법

5.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

가. 전기이월액(㉔):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.

나. 필요경비산입액(㉕): 전기이월액(㉔)의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.